

무죄 판결에 관한 설명문

2011년 5월 20일 금요일, 변 재창 선교사의 형사 재판에 대해, 미토(水戸)지방법원 츠치우라(土浦)지부 간다 타이스케(神田大助) 재판장은, 「**범죄 사실이 없는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미디어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왜곡된 정보가 계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하는 그러한 왜곡된 정보에 현혹되는 일 없이, 본 재판 판결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판결문의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한 내용이므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판결 내용은「**범죄 사실이 없는 무죄**」입니다.

이번에「**범죄 사실이 없는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밀실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무죄가 되었을 뿐이다**」라는 식의 왜곡된 정보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무죄 판결은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 「**범죄 사실 그 자체가 없었다**」라는 내용의 무죄 판결임을 명확하게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결국, 「**변 재창 선교사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가 밀실에 단 들이 있었던 사실 조차 없었다**」라는 판결입니다.

이번 재판의 발단은, 과거 저희 교단에 속해 있었던 여성 A씨가 2007년 2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사이에, 변 재창 선교사의 자택 침실에서 성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허위 고소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변 재창 선교사 부부가 당일 오전 11시경부터 한국에서 오신 김 한중 선교사 일행 4명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특히, 범행시간으로 지목한 시각에는, **변 재창 선교사와 김 한중 선교사 일행은 외출 중이었기 때문에 자택에는 없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객관적인 증거자료**」라는 것은, 당시 김 한중 선교사가 변 재창 선교사와 함께 외출했을 당시 촬영했던 수 십장의 사진들 및 기록된 자료들과 증언 등을 말합니다.

2. 검찰 측이 주장한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사진의 조작 가능성**」은, 검찰 측 전문가에 의해 실시된 감정에 의해, 「**조작된 흔적은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변 재창 선교사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사진이, 범행이 일어났다고 하는 2007년 2월 17일 토요일에 촬영된 것이 아니라, 그 하루 전인 2월 16일에 촬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검찰 측의 주장에 따라, 법원은 검찰 측이 추천한 현직 경찰관인 전문 감정사(関東 管区 警察局 情報通信部 情報技術解析課 警察庁 技官)에게 사진 데이터 및 사진이 보관되어 있던 HDD(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의 디지털 기록을 장기간에 걸쳐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진 데이터와 사진이 보관되었던 HDD 내에서는,

「그 어떤 조작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증명 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판결을 통해서,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증거 사진이 조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그 외의 객관적 증거들로, 「김 한중 선교사 일행이 2007년 2월 16일에서 17일까지 투숙했던 호텔의 숙박 기록과 호텔 방에서 사용한 전화 사용 명세서, 「출입국 관리기록」을 들었습니다. 또한, 기상청의 기상 관측 데이터에 의하면, 2007년 2월 16일의 기상 상태는 「쾌청」이었으나, 김 한중 선교사가 촬영한 사진 속의 기상 상태는 「쾌청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사실, 여기에 김 한중 선교사가 당시의 일정이나 일과를 기록했던 수첩의 내용을 통해서도 이 사진들이 2월 16일에 촬영되었다라는 「**검찰 측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에 모순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사진의 데이터 및 HDD의 기록뿐만 아니라. 그 외의 많은 객관적인 증거들로 인해, **변 재창 선교사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사진은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3. 이번 판결로, 국제 복음 그리스도 교단에서 실시된 성경 교육이 일반적인 기독교 교육에 비교해봐도, 「특이한 점이 없다」라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A씨가 헌신자로서 생활하던 가운데, 「부당한 속박을 강요당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도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A씨는 자신이 변 재창 선교사로부터 성적인 피해를 입게 된 배경에는, 변 재창 선교사와 본 교단이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이단적인 가르침, 즉, 「영적 지도자에게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고, 그 지시가 어떠한 것일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철저히 교육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음으로 인해, 「변 재창 선교사에게 순종하지 않을 경우, 고통과 고난이 따르는 광야 인생을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아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쌓여, 결국, 성적인 피해까지도 입을 수 밖에 없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 점에 관해, 법원 판결은, A씨가 자신이 그러한 교육을 받은 증거물로서 제출한 교제, 「축복의 원점」(변 재창 지음) 및 「제자훈련 평신도를 깨운다」(옥 한흠 지음), 그리고 A씨 본인의 Q.T 노트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일본의 저명한 성경학자이며, 대표적인 지도자의 증언까지도 참고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에 사용된 교제의 내용, 그리고 교제에 A 씨가 자필로 기록한 메모 내용, 또한, Q.T 노트에 나타난 A 씨의 심리 상태와 생활 모습에서, 「**A 씨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A 씨는 Q.T 노트를 본 교단 목사들이 보기 때문에, 본심을 기록할 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시다만, Q.T 노트의 내용을 목사들이 보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자신이 본 교단에서 헌신 생활 및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심한 속박을 받아, 자유를 누릴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였습시다만, 법원은 판결에서, A씨의 Q.T 노트를 보면

「(미용실의) 커트 모델」, 「아르바이트를 동료들과의 식사 모임」, 「운전 연수」등, 개인적인 생활을 자유롭게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고, 또한, A씨 본인이 법정에서 「외부인과의 교류가 특별히 금지되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점, A씨보다 먼저 본 교단을 탈퇴한 본인 가족들과 A씨에 대해, 본 교단이 억지로 복귀시키려고 한 일도 없었던 점 등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A씨가 본 교단에 속해 있을 때 느꼈다는 부자유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목사가 되기 위해, 교회에서 생활하는 경건한 기독교 신앙인이려면, 누구나가 감수해야 하는 수준의 것이라고 생각되며, A씨가 강조하는 것 같은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 법원은 판결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A씨 본인의 증언 내용에는, 「많은 부자연스러운 점과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A씨의 증언을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A씨의 증언과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자료, A씨와 변 재창 선교사가 주고 받은 메일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 A씨가 본인이 작성했다고 주장한 사직서에, 제 3자의 지시를 받아 본 교단을 비난하는 내용이 추가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그 밖에도 많은 곳에서 A씨가 주장해 왔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기록들이 발견되었음을 명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의 행동 자체에도 많은 불합리적인 면이 있으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부자연스러운 점과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A씨의 주장에는 모순점이 많으며, 그 증언을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 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재판의 판결이 무죄가 된 경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 드리고 싶은 점은, 이번 「무죄 판결」은 「밀실에서 벌어진 범죄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 법원이 약 1년 4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위와 같이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철저히 조사한 결과, 「A씨가 증언 내용과 같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라는 의미인 「범죄 사실이 없는 무죄」 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2011년 6월 3일, 검찰 측이 「항소를 단념」하였기 때문에,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검찰 측으로서도 이와 같이 명백한 증거에 의거한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단념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내용을 여러분께 전하게 된 것은, 현 시점에 이르러서도 인터넷이나 메스컴을 통해 왜곡된 정보가 널리 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왜곡된 정보에 현혹되시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일본 국제 복음 그리스도 교단 총 노회 목사 이동